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Phone:+82-70-8799-8746
Fax :+82-70-8799-8774
E-mail : mer@krs.co.kr
Person in charge : Pyeon Kang Il

No : 2021-ETC-07

Date : 2021.11.03

제목 : UK MRV 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 이행 지침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탈퇴 이후 독자적인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데이터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UK MRV)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2021년 9월 17일 이해 관계자들의 향후 2년간의 제도 준수사항과 일정에 대한 초기 지침(Guidance-Marine Information Note 669)을 발행하였습니다.

UK MRV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에 따라, 영국 항만에 입출항하는 5,000GT 이상 모든 선박은 이산화탄소 배출 데이터의 보고를 위해 해당 지침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Merchant Shipping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2018

이에, 한국선급은 지침에서 언급하는 UK MRV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예상되는 해운회사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정보를 발행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MIN 669(M+F) - Reporting Emissions Data into the UK MRV Regime 1부.
2. MERCHANT SHIPPING 2018 No.1388 - Merchant Shipping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2018 1부.
3. MERCHANT SHIPPING 2017 No.825 - Merchant Shipping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the Port State Control (Amendment) Regulations 2017 1부.

1. 개 요

1.1 UK MRV 제도의 주요 사항

- To UK, From UK, Between UK 또는 UK 항만 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화물 및/또는 승객을 운송하는 5,000GT 이상 선박은 UK MRV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 EU MRV 제도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선박(예: 군함)은 UK MRV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예외가 적용됩니다.
- 해운회사는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기 전 승인된 UK 모니터링 계획서(Monitoring Plan)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선박 별 연간 배출량 보고서(Emission Report)의 검증과 모니터링 계획서(Monitoring Plan)의 평가는 영국인정서비스(UKAS)에 의해 인정된 검증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 해운회사는 배출량 보고서 검증자의 UK MRV 인정(UKAS)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각 선박은 보고기간 동안 배출량을 모니터링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 보고 기간 이후 차년도 4월 30일까지, 각 선박은 보고 기간에 대한 배출량 보고서 및 데이터를 검증 받아야 하며, 검증이 완료된 배출량 보고서를 영국 행정부(UK Administration)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고 기간 이후 차년도 6월 30일까지, 유효한 적합확인서(Document of Compliance, DoC)를 각 선박에 비치해야 합니다.
- 영국과 유럽경제지역(EEA) 간 항차에 한하여, EU MRV 제도에 근거하여 적합확인서를 받으면 UK MRV 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영국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이 MRV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6월 30일까지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1.2 UK MRV 제도 수립 방향

영국은 더 이상 EU MRV 제도권 아래 있지 않지만, EU 규정인 Regulation(EU)2015/757 은 2018년 EU(탈퇴)법*에 따라 자국법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영국만의 전후 사정을 반영하여 본 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The Merchant Shipping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Amendment) (EU Exit) Regulation 2018*

영국은 또한 다음 법률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했습니다.

- 위원회 위임 규정 (EU)2016/2071(선박 배출량 모니터링 방법)
- 위원회 실행 규정 (EU)2016/1928(화물 운반)
- 위원회 실행 규정 (EU)2016/1927(선박 배출량 템플릿)
- 위원회 위임 규정 (EU)2016/2072(선박 배출 검증 및 인정)

UK MRV 제도를 확립하는 법률은 EU MRV 제도를 근간으로 합니다. UK MRV 개정안은 Merchant Shipping(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2018(SI 2018/1388)에 명시되어 있으며, Regulation (EU)2015/757의 개정과 모니터링 계획서 및 배출량 보고서와 관련한 Regulation (EU)2016/1927의 템플릿의 일부 변경사항을 포함합니다.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확인서의 UK 템플릿에 대한 정보는 적절한 시기에 웹사이트 (<https://www.gov.uk>)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1.3 UK MRV 적용 대상 선박

EU MRV 제도의 적용을 받는 선박도 영국 항만을 입항하는 경우 UK MRV 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UK MRV 제도는 영국 항만을 오가는 상업적 목적으로 화물 및 승객을 운송하는 5,000GT 이상의 선박(기국 또는 해운회사가 등록된 곳과 관계없음)에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 선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1(MIN 669) Annex B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UK MRV 제도에서 요구되는 항차 및 배출량 데이터

UK MRV 제도 범위 내의 선박 종류 및 수집용 배출데이터의 유형은 EU MRV 제도와 동일합니다. 영국과 EEA 국가 간 항차에 대한 데이터는 EU MRV 제도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며, 영국정부(UK MRV)에 별도로 보고될 필요는 없습니다.

선박은 UK MRV 제도에 따라 영국 항만을 오가는 모든 항차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야하며, 보고해야 하는 항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로써 2021년 UK MRV 배출량 데이터의 경우, 영국 정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영국 항만 간 항차(Voyages between two UK ports)
- 영국 항만과 Non-EEA 항만 간 항차(Voyages between UK and non-EEA port)
- 위의 항차에 대해 영국 항만 내에서 발생한 배출량(Emissions generated at a UK port for the above voyages)

해운회사는 '영국본토 항만'과 '영국 해외 영토(oversea territories)/영국령 종속지(crown dependencies)*' 간 항차를 모니터링 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본토 항만이 포함되지 아니한 '영국 해외 영토(oversea territories)/영국령 종속지(crown dependencies)'만이 포함된 항차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포클랜드 제도(Falkland Islands), 지브롤터(Gibraltar), 맨섬(Isle of Man), 저지(Jersey) 등

[UK MRV 본토/종속지 보고 예시]

- 영국 본토(UK) ↔ 영국령 종속지(Jersey) : UK MRV 보고 필요
- 영국 본토(UK) ↔ 영국 해외 영토(Gibraltar) : UK MRV 보고 필요
- 영국령 종속지(Jersey) ↔ 영국 해외 영토(Gibraltar) : UK MRV 보고 불필요
- Non EEA ↔ 영국령 종속지(Jersey) : UK MRV 보고 불필요
- Non EEA ↔ 영국 해외 영토(Gibraltar) : UK MRV 보고 불필요
- EEA ↔ 영국 해외 영토(Gibraltar) : UK MRV 보고 불필요, EU MRV 보고 필요

UK MRV 제도에서 항차 및 연간 기준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데이터 유형과 매개변수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Per-Voyage basis]

- 출발 및 도착 일자와 시간을 포함한 출발 항만과 도착 항만
- 각 연료 종류별 전체 사용량의 합계 및 해당 연료 종류에 대한 배출계수
- CO2 배출량
- 운항 거리
- 해상에서 소요된 시간
- 화물 운송량
- 운송업무량

[Annual basis]

- 각 연료 종류별 전체 사용량의 합계 및 해당 연료 종류에 대한 배출계수
- 이 규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총 CO2 배출량
- 영국 항만 사이에서의 모든 항체에 대한 총 CO2 배출량
- 영국 항만으로부터 출항한 항체에 대한 총 CO2 배출량(EEA 항만으로 입항하는 것은 제외)
- 영국 항만으로 입항한 항체에 대한 총 CO2 배출량(EEA 항만에서 출항하는 것은 제외)
- 영국 항만 내에서 발생한 CO2 배출량
- 총 운항거리
- 해상에서 소요된 총 시간
- 총 운송업무량
- 평균 에너지 효율

2. 시행 방안

2.1 모니터링 계획서(Monitoring Plan) 작성

승인된 UK MRV 모니터링 계획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박 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박이 이미 EU MRV 제도 하에서 모니터링 계획서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해운회사는 이 계획서가 UK MRV 제도에 부합하는지 혹은 개정이 필요한지를 검증자에게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 모니터링 계획서를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현재 모니터링 계획서가 없는 영국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운회사와 검증자 간의 협의사항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검증자에게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평가절차를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운회사는 각 선박에 대해 항차 별 연료 사용량 및 운항 거리, 운항시간 및 운송량과 같은 기타 매개변수에 근거하여 배출 데이터 모니터링 및 보고 방법을 명시하는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의 목적은 계획서를 토대로 연간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배출량 보고서에 기입하기 위함이며, 인정된 MRV 검증자로부터 검증을 받기 위한 준비 자료입니다.

UK MRV 템플릿은 EU MRV에서 사용된 것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모니터링 계획서는 UK MRV 제도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검증자로부터 평가받아야 하고, 해운회사에 의해 작성된 모든 부적합 사항들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UK MRV 모니터링 계획서를 평가할 책임은 영국 인정기관(UKAS)이 인정한 검증자에게 있습니다. 검증자가 만족할 경우, EU MRV 제도를 준수하는 기존 모니터링 계획서를 가진 해운회사는 EU 및 UK MRV 모두에 대해 기존 계획서를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박의 특성과 기능을 반영하고 모니터링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계획서를 매년 점검해야 하며 수정 사항이 있으면 검증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해운회사가 선박을 인수한 경우, 해당 선박의 모니터링 계획서를 영국 항만에서 처음 출항한 지 2개월 이내에 검증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운회사가 모니터링 계획서를 검증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은 없으므로, 이러한 승인절차들을 상호 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모니터링 계획서 사본에 대한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

- 선박에 비치할 것(선원이 배출량 데이터의 적절한 수집을 보장하기 위해 사본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영국 행정부(UK Administration)에 제출할 것, 또는
- 신규 영국 보고 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음(사용 가능할 경우)

2.2 데이터 수집

UK MRV에서 해운회사는 승인된 모니터링 계획서(Monitoring Plan)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배출량 보고서(Emission Report)를 제출하기 위해 선박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운회사는 각 항차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검증자에게 모니터링 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EU MRV와 마찬가지로 보고 기간 중 모든 항차가 영국 항만에서 시작 또는 종료되고 보고 기간 동안 300회 이상의 항차를 수행하는 경우 선박은 이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운회사는 모니터링 계획서에 수집된 데이터를 계산하는 절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영국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배출량 보고서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매년 보고되어야 합니다. 영국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보고할 때 "운항 거리" 또는 "화물 운송량"과 같은 화물 및 기타 관련 매개 변수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연도로 시작하고 끝나는 항차의 경우 모니터링 및 보고 데이터는 첫 번째 연도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영국은 2021년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2021년에 시작하여 2022년에 끝나는 항차에 대해 UK MRV 제도에 따라 배출량 데이터를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2022년에 시작해서 2023년에 끝나는 항차에 대해서는 <2022년 배출량 보고서>에 모든 배출량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운회사가 보고기간 중 중고선박을 인도하게 된다면, 전 해운회사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배출량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입수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 시 전체 보고기간 동안의 배출량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은 선박을 인수한 해운회사의 책임입니다.

2.3 데이터 보고

매년 4월 30일까지 해운회사는 각 선박에 대해 확인된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UK MRV 제도의 경우, 2023년 4월 30일(2022년 보고 기간)까지 해운회사가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운회사들은 4월 30일 이전에 검증자의 요청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2월 15일까지 배출량 보고서를 검증자에게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운회사로부터 제출된 배출량 보고서는 관련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함께 제출된 증빙자료(예: BDN, 항차보고서, AIS 등)와 일치해야 합니다. 검증자로부터 데이터 검증이 완료되면, 해당 선박에 대한 적합확인서(DoC)가 발급됩니다.

영국과 EEA 항만 사이를 오가는 항차에 대한 데이터는 EU MRV 보고서의 일부로 유럽 위원회(EC)에 보고되어야 하며 UK MRV 보고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영국 정부 추가 검토 중)

EU Regulation 2015/757 제11조는 배출량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U Regulation 2015/757의 제12조는 배출량 보고서를 자동화된 시스템 및

데이터 교환 형식을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THETIS-MRV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MRV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영국 산업 분야로부터 MRV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요소는 2022년 하반기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박 배출량 데이터를 UK MRV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는 적절한 시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2.4 제도 준수 및 시행

2023년부터 매년 6월 30일까지 해운회사는 이전 보고 기간 동안 UK MRV 제도의 적용을 받았던 선박이 유효한 적합확인서(DoC)를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국과 EEA 국가 항만 사이의 항차에 대해서는 EU MRV 적합확인서가 승인됩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 기간 동안 영국 항만 간, 영국 항만 및 EEA 국가 이외의 항만 간 항차에 대한 검증된 배출량 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별도의 UK MRV 적합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증서는 보고 기간이 끝난 후 18개월 동안 유효 합니다.

2.5 연간 보고서 발간

EU 규정 2015/757의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23년 이후 영국 정부에서는 배출량 데이터 및 기타 해상운송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결과를 포함한 연간 보고서를 매년 발간할 예정입니다.

배부처 : 모든 검사원, 선주, 관련 업계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

Appendix 1. 영국 정부로부터 제공된 UK MRV 시행에 대한 타임라인

